

의안번호	제 328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5월 일 (제310회)

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 
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김희수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2년 5월 1일

#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희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2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5월 1일

발의자 : 김희수 · 김봉희 · 정현 · 김종필 ·  
박문희 · 윤성옥 · 황규철 의원(7명)

## 1. 제안 이유

- 각종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지원센터의 기능 조항 신설(안 제3조의1)
- 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의 개정(안 제6조제3항제7호)

## 3. 조례안 : 불임

## 4. 관계법령 발췌 : 불임

## 5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## 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와 협의

## 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## **충청북도조례 제 호**

# **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1(지원센터의 기능)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.

1.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, 농지·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
2.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·조정 지원
3.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
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7조에 따른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
5.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평가 항목·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6.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
7.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의1 제5호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~ 제3조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조 ~ 제3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의1(지원센터의 기능)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, 농지·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</li> <li>2.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·조정 지원</li> <li>3.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</li> <li>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</li> <li>5.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평가 항목·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 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</li> <li>7.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~ 제5조(생략)	제4조 ~ 제5조(현행과 같음)
제6조(구성) ① ~ ② (생략)	제6조(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③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「 <u>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</u> 」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	7. 「 <u>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</u> 」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
8. (생략)	8. (현행과 같음)

## 관 계 법령

### □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
제5조(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) 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(이하 "국가산업단지"라 한다)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에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(이하 "일반산업단지등"이라 한다)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시·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, 구성원은 해당 기관에서 도시계획, 산업입지, 건설, 교통,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③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도지사는 인근 군부대의 장, 지방환경관리청장, 지방산림청장,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,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3일 이내에 그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·도지사(이하 "국토해양부장관등"이라 한다)는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등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

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국토해양부장관등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, 산업입지, 건설,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11.7.21, 2011.8.4>

1.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, 농지·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
2.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·조정 지원
3.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
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7조에 따른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
5.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평가 항목·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6.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
7.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⑦ 국토해양부장관등은 지원센터의 구성원이 산업단지의 지정·개발에 기여한 경우 포상·승진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등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⑧ 지원센터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토해양부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) ①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시·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.

1.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
2.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정권자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·제7조·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
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,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·도지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,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1.8.4>
  1.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
  2. 도시계획, 산업입지, 건축, 교통,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
 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속한 시·도에 설치된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, 설계전문가,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
  4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라 해당 시·도에 설치된 교통 영향분석·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  5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해당 시·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구성·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

해당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
6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

7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
8.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

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,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